교원인사 규정 중 개정 규정

1.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

- 「사립학교법」 제66조의4(징계 사유의 시효)에서 인용하고 있는 「교육공무원법」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, 조문의 형식을 「사립학교법」 제66조의4에 맞추어 개정함 (제59조)

2. 개정 규정

교원인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9조(징계사유의 시효) 총장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. 다만, 징계 사유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

부칙(2023. 5. 12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교원인사 규정 중 개정 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구	신	개정사유및내용
제59조(징계사유의 시효)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. 다만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·유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,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못한다.	제59조(징계사유의 시효) 총장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. 다만, 징계 사유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 부칙(2023. 5. 12. 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*사립학교법 제66조의4 반영